



 금융위원회	<b>보 도 자 료</b>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b>보도</b>	2017.7.14(금) 조간	배포	2017.7.13(목) 11:00
<b>책 임 자</b>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손 영 채(02-2100-1730)	<b>담 당 자</b>	김지웅 사무관(02-2100-1725) 김명지 사무관(02-2100-1726)	

## 제 목 :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우리의 대응

\* **AML (Anti-Money Laundering : 자금세탁 방지)**  
**CFT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 테러자금조달 차단)**

- ◇ G20 정상들은 지난 7.7~7.8일 기간의 회의를 마치며 테러자금 조달 차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 \* 「The Hamburg G20 Leaders' Statement on Countering Terrorism」
  - FATF\* 국제기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강조하고, 이 분야 후진국에 대한 기술지원, 법인의 실제소유자 정보 수집·활용, 소액송금 수단의 위험성에 대한 대처 강화 등을 촉구함
    - \* 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 UN 협약 및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의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로서('89년 설립), AML/CFT 분야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각국 정부의 이행현황을 평가·감독
- ◇ 문재인 대통령은 테러집단들의 자금조달 원천 차단을 위한 FATF의 역량 강화 노력을 지지하며, 한국도 G20에서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힘
- ◇ 우리 정부는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여 관계 부처 간 협력에 기반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1. G20 정상회의 결과 AML/CFT 관련 내용

- 지난 7.7~7.8일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결과, 정상선언문(Leaders' Declaration)과 별도로 테러 행위 차단을 위한 정상성명서(Leaders' Statement on Countering Terrorism)를 발표함
  - '15년 파리 테러 직후에 열린 정상회의의 성명서에서는 테러 행위 자체의 방지를 강조하면서 테러자금조달 차단의 필요성을 간략히 언급한 반면,
  - 금번 성명서에서는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FATF 기준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① 테러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안전지대 (safe spaces)" 제거를 위해 **FATF 차원의 후진국 등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
- ② 법인 등 단체를 악용한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해 '**법인 등의 투명성 강화 및 실제소유자\***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 강조
  - \* 등기부 상 대표자가 아닌 실제 법인을 지배하는 자연인
- ③ 자금이동 경로가 복잡한 **다양한 형태의 소액거래 수단 증가**에 따른 테러자금조달 위험성을 지적하고, **관계부처·민간기관 간 협력 대응 요청**

- 문재인 대통령은 G20 리트리트 세션(7.7일, 각국 정상들만 참석하는 비공식 회의)에서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한 FATF의 역량 강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씀하였음

### <대통령 리트리트 세션 발언 내용>

...그 동안 G20에서 합의된 사항들과 UN 안보리 결의 등을 다함께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도 적극 동참하고 특히 피해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테러집단들의 자금조달 원천 차단을 위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역량 강화 노력을 지지합니다. ...

## 2. 우리나라의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

### 가. FATF TREIN<sup>1</sup> 설립·운영을 통한 FATF 역량 강화 지원

\* FATF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 한국은 FATF 의장국 수입('15.7월~'16.6월)을 계기로 높아진 AML/CFT 분야에서의 국제 역량을 바탕으로 FATF 산하 유일한 교육·연구기구인 FATF TREIN을 유치('16.9월, 부산)

- 기준 제정과 평가 위주의 기존 FATF의 활동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온 교육·연구기능 수행을 위해 설립됨

- FATF TREIN은 범세계적 AML/CFT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취약지대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중임

\* 정규 교육프로그램 내용의 상당부분이 테러자금조달 차단과 관련되어 있고, 연구과제 2건(실제소유자, 인신매매 자금흐름)도 금번 정상성명서에 직접 언급되어 있는 주제임

#### 최근 FATF 총회('17.6월)에서의 TREIN 활동

- '17.2월 총회에서 승인된 '17년도 운영계획에 따른 상반기 교육실적, 대외협력 활동 내역 등 보고'
  - \* 국제전문가 확충(6인), 정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샵 3회 및 시범 교육 프로그램 1회 개최, 유관 국제기구(UN, WB 등) 및 정부회의 참여 및 초청 등
- 다수 회원국들은 FATF의 유일한 교육·연구기관인 TREIN의 단기간 내 정착을 위해 힘쓴 한국정부와 케빈 스티븐슨 원장에 감사를 표함
- 미국·프랑스·중국·러시아·GABAC(중앙아프리카지역기구)·MENAFATF(중동·북아프리카지역기구) 등 다수 회원국은 TREIN에 대한 지지 및 협력 의사 표시
  - \* FATF 사무국 시행 상호평가자 교육에 앞서 TREIN에서 국제기준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다음 총회(10월)에서 논의키로 총회에서 결정
  - \* 차기 FATF 의장(前 아르헨티나 법무부 장관)은 업무계획에서 TREIN의 성공적 정착의 중요성과 향후 역할 강화(e-learning, Technical Assistance 등)에 대하여 언급
- 연구과제로 실제소유자, 인신매매 관련 자금 흐름 2건을 총회에서 확정

⇒ TREIN 예산·운영의 효과적 지원과 세계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TREIN의 안정적 정착 및 국제적 위상 제고를 도모

### 나. 법인 등의 투명성 강화와 실제소유자 관련 제도 개선

- 국제기준은 법인 등의 투명성 강화\* 및 권한당국의 법인 등 실제 소유자 정보 활용을 요구

\* 무기명주식, 주식 명의신탁, 명의상 대표이사 제도 폐지 등

- 한국은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14년)하고, 금융회사에 실제소유자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음('16.1.1.부터 시행)

\* 계좌개설 시점에 실제소유자의 실명, 국적 등을 확인

- 다만, 국가기관(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관계 기관 간 공유·활용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FATF 평가보고서('09년)는 국세청 보유 실제소유자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음을 문제로 지적

➔ 법인 등을 악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제소유자 정보의 관계기관 간 공유·활용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

### 다. 소액송금거래의 위험성에 대처

- 국제기준은 송금업자에게도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고객확인, 의심 거래보고 등 핵심적인 AML/CFT 의무 부과를 요구

-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금년 7.18일부터 도입되는 소액해외송금업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가 시행될 예정

① (고객확인) 고객의 신원(실지명, 주소, 연락처) 및 실제소유자, 금융거래 목적, 자금원천 등을 확인

② (의심거래보고) 고객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

③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100만원 (또는 미화 1천달러) 초과 송금 시 송금인·수취인의 성명·계좌번호 등을 송금받는 금융회사에 제공

➔ 송금업자들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AML/CFT 의무를 이행토록하여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계획  
- 이와 관련,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AML 등 의무부과 방안도 조속히 마련

## 라.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범부처 간 협력 대응

- FATF는 회원국에 대해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 51개 기준\* 항목별로 등급을 매기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의 최종승인 시까지 이행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토록 함
    - \* AML/CFT를 위해 법제화해야 할 40가지 사항과 법제화된 제도의 효율적 운영·집행을 위한 11가지 사항
  - ⇒ '12년도 강화된 국제기준에 따라 '14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스페인, 싱가포르 등 14개 국가가 FATF 평가를 받았으며, 우리나라는 '19년에 평가를 받을 예정
  - 평가 수준이 저조한 국가에 대해서는 FATF 성명서를 통해 해당 국가의 국민, 금융회사 등과의 거래 제한 등을 회원국에 요구
- 국제기준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FIU 금융 거래 분석 등 기존 FIU 중심의 제도 도입 및 운영 뿐 아니라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련 기소(수사·조사 포함)·몰수, 국가 간 사법공조, 위험 평가를 통한 정책 수립 등 국가적 차원의 위험 평가와 제도 개선 및 효과적 운영·집행을 요구

➔ 정책기관(법무, FIU 등) 및 법집행기관(검·경, 국·관세청 등) 간 협력을 통한 국가위험평가 실시, 기소·몰수 확대, 기존 실적 발굴 등 관련 부처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

## 참고

## FATF 개요

### 1. 설립 목적

-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 \* (주요 UN협약) 비엔나 협약('88, 마약),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UN 협약('99), 팔레르모 협약('00, 조직범죄), 메리다 협약('03, 부패) 등
- 설립 이후 관할 범위가 마약 → 중대범죄(황령, 뇌물 등)('96) → 테러자금조달('01) →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12) 등으로 확대
  - \* 북한, 이란의 WMD(대량살상무기, Weapon of Mass Destruction) 자금조달에 대한 정밀금융제재(Targeted Financial Sanction) 내용 포함

### 2. 주요 기능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의 이행 현황을 회원국간 상호평가(Peer Review)를 통해 평가·감독
  - \* AML(Anti-Money Laundering) & CFT(Counter Financing Terrorism)
- AML/CFT 국제규범 미이행 국가를 선별하고 제재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수단 개발 등

### 3.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FATF 역할 강화

- 파리 테러('15.11월)를 계기로 G20, G7, UN 등 국제사회는 테러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을 강조
- 파나마 페이퍼스\*('16.4월) 사건을 계기로 G20, G7, 반부패정상회의에서 실소유주 관련 FATF 국제기준의 이행 요구
  - \* Panama Papers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약 1,150만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 정보 포함

#### 4.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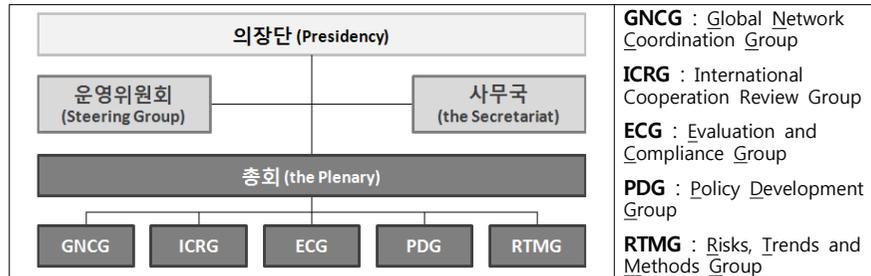
##### □ 회원 구성

- 정회원(35개국 + EC, GCC), 준회원 (FATF 산하의 9개 지역기구), 옵서버 (IMF, WB, UN 등 28개 국제기구)로 구성

< FATF 정회원 현황 >

지역	OECD 국가	非OECD국가	국제기구
유럽 (20)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러시아	European Commission
미주, 기타 (7)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 아르헨티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아태 (10)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중국, 인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계 (37)	26	9	2

##### □ 조직 구조



##### □ FATF 의장

- 1년 임기이며 (매년 7월~익년 6월), 직전 1년간 부의장직 수입
  - \* 신제윤 前의장은 '14.7~'15.6 부의장직 수입 후, '15.7~'16.6 의장직 수행
- 의장은 FATF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총회·운영위 등 주재

##### □ 총회 : FATF 최고 의사결정기구

- FATF 국제기준 및 정책 방향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비정치적·기술적 성격\*을 중시함
  - \* 다른 국가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국제기준 이행을 강제